

 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2019년 9월 1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검역정책과 과장 장재홍(044-201-2071), 사무관 김지호(2072)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과장 강해은(054-912-0857), 연구관 김용주(0858) / 제공일: 9월 11일(총 2매)		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바이러스의 유전자(1건) 추가 확인

□ 농림축산식품부(이하, '농식품부')는 중국(상하이)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
* ('18년) ASF 유전자 검출 4건(순대 2, 만두 1, 소시지 1)
 ('19년) ASF 유전자 검출 16건(소시지 11, 순대 2, 훈제돈육 1, 햄버거 1, 피자 1)

○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(1건, 소시지)은 중국 상하이를 출발하여 지난 9월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 반입하여 자진신고 한 것이다.

○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,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(genotype)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.

* 세포배양검사(약 4주)를 거쳐 바이러스 생존 여부 최종 확인 예정

□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.

○ 추석 명절 계기 특별국경검역강화 기간(9.1.~9.30.) 동안 해외 여행객의 휴대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및 탐지견 투입 등 검색을 강화하고, 여행객이 휴대하여 반입한 축산물(육류 및 그 가공품)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.

*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부과 기준(2019.6.1. 개정)
 -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돼지고기 및 제품은 1차 500/2차 750/3차 1000만원, 그 외의 경우 1차 100/2차 300/3차 500만원
 - 외국인의 경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
 ** 과태료 부과 현황(6.1. 이후) : 18건(한국 4, 중국 6, 우즈베크 3, 캄보디아 2, 태국·몽골·필리핀 각 1건)

□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를 비롯한 축산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,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, 착용했던 의복, 신발 등의 세탁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